별지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

가. 편의제공 대상

○ 신규직원 채용 응시자 중 응시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,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
-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
나.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결과안내

○ 장애인·중증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 중 희망자는

- **(신청)** 지원서 접수기간에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· 신청

  *[붙임1]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사지원서 내 '첨부서류' 업로드

- **(증빙)** 면접시험 대상자가 되면, 안내에 따라 장애인증명서,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,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
- **(결과)** 담당자가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 개별 통보

다. 유의사항

○ [붙임2]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고하여,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사전에 반드시 확인

○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장애유형·정도 등 및 편의제공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, 의사진단서 등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

○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

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 인정 불가

※ 종합병원(상급종합병원)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에서 조회(반드시 확인 후 발급)

붙임1 **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서**

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서

○ [별지2]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를 숙지하신 후,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,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

1. 인적사항

지원분야(직급)	성명	연락처(휴대전화)	장애유형·정도

2. 편의제공 신청 내용

편의제공 전형	신청 (✓표시)	편의제공 내용	필요성(구체적으로 기재)
면접시험	□		

- [붙임2]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고하여,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,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

붙임2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

전형단계	장애유형		편의제공 내용
면접시험	지체 장애	상지	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관련서식 및 면접문제지 확대 제공 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	하지	·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면접장 내 이동 지원
	뇌병변 장애		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관련서식 및 면접문제지 확대 제공 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면접장 내 이동 지원
	시각 장애		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관련서식 및 면접문제지 확대 제공 ·관련서식 및 면접문제지 축소 제공(확대독서기 사용자) 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청각 장애		·보조공학기기 착용 허용(인공와우 등) ·관련서식 및 안내사항 서면제공 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
※ 위 명시되지 않은 기타 편의제공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지원 예정